행복한 도민
신뢰받는 의회

| 제352회 정례회 |
| --- |
| ‘16. 11. 30. (수) |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 청 북 도 의 회
산업경제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**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# 심 사 보 고 서

| 의안 번호 | 519 |
|---|---|

2016.11.30.(수)
**산업경제위원회**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(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의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2011년 6월 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‘보육시설’이라는 문구가 ‘어린이집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6조제2항 중 ‘보육시설의 장’을 ‘어린이집의 원장’으로 개정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○ ‘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2011년 6월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‘보육시설’이라는 문구가 ‘어린이집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❍「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보육시설의 장”을 “어린이집의 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(생 략) | 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(현행과 같음) |
| ② 도내에 소재한 보육시설의 장, 유치원장, 학교의 장, 교육청(지원청 포함) 및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·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. | ②----------어린이집의 원장----------.<br>(현행과 같음) |

# 관 계 법 령

## □ 영유아보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“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육“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집“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